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1995. 10. 16.

내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95. 10. 2.

나. 제출자 : 달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 95. 10. 4.

라. 상정 및 의결

○ 제4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 제1차 내무위원회 상정 : 95. 10. 16.

• 제1차 내무위원회 의결 : 95. 10. 16.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사유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권한위임에서 제외된 주민등록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권한 위임토록 개정하여 주민등록사무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권한 위임토록 함(안 제2조 제3호)

다.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3. 검토의견

본 조례 개정은 주민등록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과 직접 접하는 동에서 과태료과징 업무를 담당하므로 과태료 체납방지와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조례개정으므로 제출된(안)과 같이 제2조 제3항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질	의	답	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사항을 권한위임할 경우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시 동장이 구청장의 명의로 부과·징수하던 것을 실제 주민등록업무를 관리하는 동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동시 부여하게 되므로 주민에 대한 책임행정이 구현될 것으로 사료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 (안)

의안 번호	95-41
----------	-------

제출년월일 : 95. .

제 출 자 : 달서구청장
(총 무 과)

1. 제안이유

-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권한위임에서 제외된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권한 위임토록 개정하여 주민등록사무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기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3. 주요골자

-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권한 위임토록 함. (안 제2조 제3호)

4. 개정(안) : 붙임1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 (안)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개정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중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 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2(생략) 3.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생략)	제2조(권한의 위임) 1~2(현행과 같음) <삭제> 4. (현행과 같음)			